

속초시제2의견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9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7. .

제 출 자 : 속초시장

1.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

- 구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(대통령령 제15903호, 1998.10.1) 제10조에 의거 제2의견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. 12.18.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,
-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2003. 6. 23. 폐지됨에 따라 법률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조례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존치 필요성이 없게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속초시제2의견국추진위원회조례(현행) : 따로붙임

나. 관련문서사본 : 따로붙임

속초시조례 제 호

속초시제2의견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
속초시제2의견국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속초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[1998.12.18 조례 제1669호]

개정 2000.10.23 조례 제1783호

개정 2001.05.18 조례 제1823호

제1조(목적)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00.10.23 조례 제1783호>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
3.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
4.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개정 2001.05.18 조례 제1823호>

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의회부의장
2. 부시장, 경찰서 경무과장, 교육청 교육과장 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<개정 2000.10.23. 조례제1783호>
3.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,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, 서기는 민간협력담당이다. <개정 2000.10.23 조례 제1783호>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0.10.23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1.05.18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정보통신망

강 원 도

우) 200-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(봉의동 15번지) 전화 033)249-2226 팩스 033)249-4056
 지역지원과장 과 장 김 영 철 민간협력담당 김 진 일 담당자 김 문 기

문서번호 지원13310-578

시행일자 2003.06.27 (1년)

공개여부 공개

수신 받는곳 참조

참조

선 람	시 장	동 무 성	지 시	
접 수	일자	2003.06.27	결 재 공 람	부시장 최상규
	시간	오전 11:14		과장 김기호
	번호	2889		담당 한동원
	처리과	자치행정과		
	담당자	이상현		
	심사자		심사일	

제목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폐지 통보

1. 행자부 행정13310-11(2003. 6. 23)호와 관련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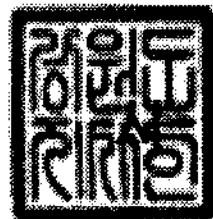
2. 「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」(대통령령 제15903호, 1998. 10. 1) 및 「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」(총리훈령 제386호, 1999. 7. 5)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음을 통보하오니,

3. 각 시군에서는 관련조례 폐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바랍니다.

붙 임 : 1. 「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폐지규정」(대통령령 제18003호)

2. 「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폐지규정」(총리훈령 제441호). 끝.

강 원 도 지



수신처 춘천시, 원주시, 강릉시, 동해시, 태백시, 속초시, 삼척시, 홍천군, 횡성군, 영월군, 평창군,
 정선군, 철원군, 화천군, 양구군, 인제군, 고성군, 양양군

대통령령 제 18003 호

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안

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영은 200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공포일로부터 시행일전까지 존속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업무는 동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기 위산 잔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.